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추가합격자 명단

| 직렬 (직류) | 임용예정직급 | 근무기관 | 응시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
| 공업 (운전) | 공업서기보 (9급)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2023공업-홍천-007 | 조○휘 | 1982-02-01 |

※ 추가합격자 선정 이유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4항)

2. 추가합격자 제출서류(필수)

가.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2부 <서식1> * 반명함판 사진(최근 3개월내 촬영) 1매 부착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2>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1부 <서식3>

나. 제출기한 : 2023. 11. 3.(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송부 중 선택

- 방문가능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3. 추가합격자 임용

가. 임용예정일은 '23. 11월 중으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나. 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포기서(서식 4)를 제출
(직접 또는 등기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결격사유 조회 및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및 임용 후 3개월 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평점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033-769-57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성 명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 |
| 등록기준지 | | | | | | | |
| 주 소 | | | | | | | |
| 실거주지 | | | | | | | |
| 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 |
| 국 적 |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국가명: |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국가명: | 배우자 및 자녀 국적 | | | |
| 자격·면허 | | | | | | | |
| 재 산 | 본인 및 배우자 | 부동산 : | 만원, | 동산 : | 만원, | 채무 : 만원 | |
| | 미혼 자녀 | 부동산 : | 만원, | 동산 : | 만원, | 채무 : 만원 | |
| 정당·사회 단체 활동 | <input type="checkbox"/> 있음 | 단 체 명 | | 기 간 | | 직 책 | |
| |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 . ~ . . | | | |
| 병 역 | 본 인 | 군 별 | 병 과 | 최종 계급 | 기 간 | | 미필 사유 |
| | 자녀 (성명) | | | | . . ~ . . | | |
| | 자녀 (성명) | | | | . . ~ . . | | |
| 학 력 (고교이상) | 학 교 명 | 기 간 | | 전공 학과 | 학 위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
|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 본인 | | | 자필서명 | 자필서명 |
| 배우자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 자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 본 인(예시) | 가 족(예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인사처)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유의사항>

- ①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 작성 및 제출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신원진술서는 2부를 작성합니다.
- ③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서명 또는 날인”은 2부 모두 반드시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 ④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신원조사는 제출된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참고로 관련 기관에서 조회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작성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직장명 및 소재지 :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연락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 e-mail을 기재합니다.

국적관계 : 해당 국적 란에 체크 표시합니다.

학력

본인의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학교명 : 본인이 졸업한 학교명이 현재 폐교, 학교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년월·졸업년월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공학과
- 학위 : 재학 중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소재지 : 학교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동·면단위까지 적습니다.)

경력

본인의 최근 경력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경력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근무경력도 기재합니다.

상별

본인의 공무원으로서 재직 시 상별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상별도 기재합니다.

병역관계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본인의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 군별, 병과, 최종계급, 복무기간 등을 기재하되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사항에 따릅니다.

○ 미필사유 : 제2국민역, 병역면제, 연령미달, 입영연기중, 여자 등을 기재합니다.

정당, 사회단체 활동경력

○ 본인이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시민단체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 동산과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입니다.

- 미혼인 경우 :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동산의 가액 등을 기재

- 기혼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동산의 가액 등을 기재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부모·배우자·본인의 자녀·형제·자매를 기재합니다.

○ 기재 순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

○ 부모,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모두 기재

배우자 부모

복한 및 해외거주 가족

○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본인의 부모·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복한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은 반드시 기재합니다.(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해외거주 가족으로 기재)

○ 해외유학, 사업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거주 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교인물

본인의 초·중·고·대학의 교우 또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 중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1)제공받는 자 | (2)제공목적 | (3)제공항목 | (4)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관할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공무원 채용 관리 |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 공무원 채용 관리 |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 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작성자 : 지필거제 (서명)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서식3]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① 구 분 | ② 시험실시 기관 | ③ 응시직명 | ④ 응시번호 | ⑤ 성 명 |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
| ⑥ 검사 시 | | | | | |
| ⑦ 재 사용 | | | | ⑧ 주민등록번호 | |

검 사 내 용

| | | | |
|-------------------------|--------|--------------|--------|
| 키 | cm | 체 중 | kg |
| 허리둘레 | cm | 혈 압 | |
| (교정)시력 | 좌: () | 색 신 (색 각) | (교정)청력 |
| | 우: () | | |
| 종 양 질 환 | | 이 비 인 후 질 환 |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장/비뇨기계질환 |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 근골격계 질환 | | 안 질 환 | |
| 정 신 질 환 | | 흉부 X선 검사 | |
| 기 타 |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
| 검사 결과 | []합 격 | 합격 사유 | |
| 합격 여부 | []판 정 보 류 | |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사유 등) |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